

공고 제2026-10호

북광주농협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북광주농협에서 함께 근무할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모집분야

직 군	직 종	채용인원	담당업무	계약기간
기간제근로자	영업지원직(경제)	1명	하나로마트	1년 단위 (최장 2년)
		2명	하나로마트(정육)	

2. 응시자격

- 기본 자격 : 거주지, 연령, 성별, 학력, 전공, 학점, 어학점수 등 제한 없음
- 북광주농협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의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
- 병역사항 : 병역필자 또는 면제자(여성의 경우 해당 없음)
- 우대사항
 - 하나로마트 : 컴퓨터·그래픽디자인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
 - 하나로마트(정육) :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

3. 접수기간, 접수방법

- 접수기간 : 2026.07.08.(수) ~ 2026.07.10.(금)(오전 9시 ~ 오후 5시)
- 접수방법 : 본인 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 접수
 - 접 수 처 : 북광주농협 본점 2층 총무과(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하서로 563)
 - 전자우편 접수 시에는 아래 제출서류를 작성 후 스캔하여 제출
(전자우편 주소 : nh601144-1@nonghyup.com)

4. 전형절차·일정 및 합격자발표

구 분	내 용	비 고
1 차	서류확인	
2 차	면접시험	면접 대상자 개별통보
3 차	신체검사	면접 합격자에 한함
합격자발표		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

5. 제출서류(소정양식은 홈페이지(<https://bkj.nonghyup.com>) 내 공지사항 참고)
- 가. 입사지원서(사진 1매 부착) 및 자기소개서(소정양식) 각 1부
 - 나. 주민등록초본(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) 1부
 - 다. 최종학력증명서 1부
 - 라. 자격증·면허증 사본,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각 1부
 - 마. 지원자 서약서(소정양식) 1부
 - 바.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(보훈관서 발행), 장애인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각 1부
- [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지원 시 제출, 나머지 서류는 면접시험 시 제출]

6.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사항

1. 이 고지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,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
2. 우리 농협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2026년 7월 16일부터 2026년 7월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우리 농협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농협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3.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]를 작성하여 우리 농협 팩스(062-571-0013) 또는 이메일(nh601144-1@nonghyup.com)로 제출하시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. **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**
4. 우리 농협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7월 30일까지 채용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.

7. 부정청탁에 따른 불이익

○ 채용 청탁 등 부정한 행위 또는 연루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될 수 있으며 추후 응시자격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8. 그 밖의 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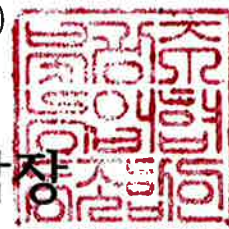
○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○ 최종합격자라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농협 내규 상 결격사유에 해당 시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○ 기타문의 : 북광주농협 총무과(☎ : 062-602-1603)

2026. 07. 06.

북광주농업협동조합장



※ 북광주농협 「계약직직원 운용규정」의 채용결격사유

-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·피특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- 병역의무를 기피 중인 사람
- 계약직직원으로 근무하고, 근로계약 해지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. 다만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신규채용 시 제출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사람. 다만, 영농 및 축산기술 지도, 농약판매가 가능한 퇴직 공무원 및 회원조합 퇴직자에 대하여는 만 70세 이상인 사람
-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52조제4항, 제5항, 제107조,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
- 그 밖에 조합장이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